

**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28호**
**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**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70호(2017.03.02.)로 정비구역 지정, 같은 고시 제2021-97호(2021.02.25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(변경)된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0월 27일  
서울특별시

**1.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개요**

| 구분 | 구역명   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| 면 적(m <sup>2</sup> ) | 정비구역 지정·고시일 | 일몰기한        | 비 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당초 | 사당5<br>주택재건축 정비구역 |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| 20,265.0             | 2017. 3. 2. | 2021.11.21. | 2년 연장 |
| 변경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2023.11.21. |       |

2.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(일몰)기한 연장

3.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(☎02-2133-7214, 동작구청 주택과(☎02-820-977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## 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29호

**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**

건설부고시 제460호(1973.11.22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초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40호(1998.7.15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8호(2014.2.6.)로 공원변경결정(면적증가 및 세분)된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0월 27일

서울특별시장

## 1. 결정취지

공원세분변경(근린→역사) 및 공원면적 증가에 따라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, 서소문역사공원을 역사 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여 관광명소화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## 2.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2가 16-4번지

## 3. 공원면적 : 21,363.0㎡

## 4.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: 따로붙임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## 5. 열람장소

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(☎ 02-2133-2068) 및 중구 공원녹지과(☎ 02-3396-5852)